

광주지방법원 2020. 2. 11 선고 2018가단525151(본소), 2019가단520719(반소) 판결 [(본소)
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청산금청구]

재판경과

광주지방법원 2021. 5. 28 선고 2020나54127(본소), 2020나54134(반소) 판결

광주지방법원 2020. 2. 11 선고 2018가단525151 판결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은숙

피고(반소원고) 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은규

변론 종결 2020. 1. 14

판결 선고 2020. 2. 11

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는 원고(반소피고)에게 2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4. 21.부터 2018. 8. 14.까지는 연 5% 의, 그 다음날부터 2019. 5. 31.까지는 연 15% 의,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원고(반소피고)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(반소원고)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본소·반소를 통틀어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[본소] 피고(반소원고, 이하 피고라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원고라 한다)에게 200,00000원 및 2018. 4. 2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[반소] 원고는 피고에게 46,560,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8. 22.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%의,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가 2016. 4. 21.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8. 4. 20.까지로 한 지역총국설립 계약을 체결하고,2016. 4. 29. 사업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한 사실 및 위 계약이 기간만 료로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할의무가 있다.
2. 피고는 원고가 인터넷 사업 등 광고비 수입에 관하여 피고에게 청산금 46,560,540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갑 제1호증 내지 제15호증의 각 기 재와 증인 C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위 계약체결 당시 본사인 피고에게 인터넷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상 업무 분 장은 문언대로 케이블방송에 한정되는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,따라서, 원고가 인터넷 사업 등 광고비 수입에 관하여 피고에게 청산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,
3. 그렇다면,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(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, 이른바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. 5. 21. 개정·공포 되어 2019 . 6.

1.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. 5. 31.까지는 기존 소촉법 상 법정이율인 연 15%가 적용되나,2019. 6. 1.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%로 변경되었으므로 2019. 6.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부분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하고),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.

판사 이 효두